

지

난 6월 3일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를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 유예 1차 협상의 탐색전을 마무리 지었다. 올해 최대 농업 협약인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참여의사를 표명한 나라는 총 9개국이다. 그 중 미국·중국·호주·태국과의 양자협상에 이어 6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키스탄, 6월 2일 인도와 이집트 그리고 3일에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와 협상을 벌였다.

이제 막 한 고갯마루를 지난 시점에서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정부의 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부가 가져갈 대응책을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요구는 어떤 것인지 짚어보자.

쌀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탐색전만 펼쳐

이제길 외교부 DDA대사를 수석대표로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김충실 WTO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경북대 교수)이 참가하고 있는 이번 쌀 관세화 유예협상은 한마디로 '눈치 보기'의 진수를 보여준 협상이었다. 협상에 참가한 각국들은 속내와 뚜렷한 입장은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리로서는 가장 예의주시를 해야만 하는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는 '실질적인 시장접근'과 '장

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진출' 등을 주장하는 등 관세화유예에 무게를 두었다. 이에 반해 태국은 '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이 관세화를 통한 시장자유화' 임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관세화 유예여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쌀 시장진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러한 자신감은 최근 중국의 자포니카(단립종)계열의 생산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품질이 우수한 우량미의 비중이 40% 이상 되며 매년 10%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고품질쌀 생산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팀은 관세화로 갈 것이냐 유예로 갈 것이냐, 유예로 갈 경우 피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등 각국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물론 대상국들도 속내를 감추고 탐색전을 벌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로써는 대상국들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동관세화에 쫓겨 다니나?

우리나라는 1차 양자협상을 통해 이해당사국들에게 쌀이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과 쌀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서 관세화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상대국들이 충분한 준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수입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가 입장을 제시하면 본격적인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지난 6월 9일 한농연회관에서 개최된 ‘한농연·농림부 쌀 관세화 유예 협상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동관세화’에 대해 논쟁이 많았는데, 한농연에서는 ‘일부에서 12월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관세화가 되는 시 간적 압박을 받고 있어 협상에서 핸디캡으로 작용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하고 ‘자동관세화로 인해 상대국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관세화의 절차와 피해를 파악하고 분명한 입장 을 취할 것’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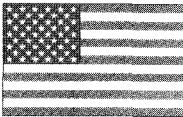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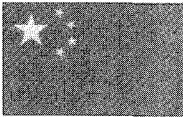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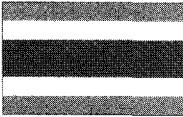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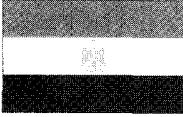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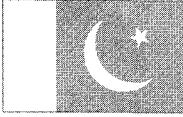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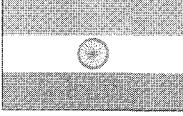
우리가 9개국과의 협상에서 관세화유예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관세화로 가야 하는데, 관세화로 갈 경우에 국내 쌀산업의 피해가 유예로 갈 경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세화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화를 거부할 경우 WTO 분쟁조정위원회(DSP)에 제소가 돼 결국 자동관세화로 개방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거친 관세화보다 더욱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라면 결국 ‘자동관세화’에 따른 우리의 다급함이 상대국들에게는 유리한 협상전술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관세화유예원칙을 고수하고 ‘자동관세화’의 우려 때문에 쉽게 ‘유예’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국들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 2차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관세화 ‘관련’ 협상?!

지난 호(통권 27호)에서도 간단히 소개했지만 이번 협상은 엄연히 ‘관세화 유예 협상’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런데, ‘유예 협상’이라고 명명하던 정부가 어느 때부터인가 ‘관세화 관련’ 협상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다.

● 각국의 반응

협상 대상국	국가 현황	협상 반응	2차 협상
	<p>▶ United States(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926만 909km² · 인구: 2억 8천7백만명 · 쌀수출: 세계 3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증량(27~28%) · 지속적으로 수출 희망 · 수입쌀의 식용사용 · 민간수입 허용 등 	6월 22일
	<p>▶ China(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960만km² · 인구: 12억 8천4백만명 · 쌀수출: 세계 6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자유화 기본입장 · 쌀관세화 방식으로 개방 희망 · 유예시 기간 단축 주장 	6월 18일
	<p>▶ Thailand(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51만 3115km² · 인구: 6천 3백만명 · 쌀수출: 세계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화가 기본원칙임을 주장 · 소비자 시판 허용 등 시장접근의 질적개선이 되면 유예도 가능 · 그러나 유예 기간 10년은 안됨 	6월 중 (WTO 농업위 활용)
	<p>▶ Australia(호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768만 6850km² · 인구: 2천만명 · 쌀수출: 세계 1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안정적인 시장진출 희망 · TRQ증량 · 소비자 직판 · 입찰규격과 시기조정에 관심 	6월 중 (WTO 농업위 활용)
	<p>▶ Egypt(이집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99만 7690km² · 인구: 6천 6백만명 · 쌀수출: 세계 7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등 수입제도 개선 · 한국시장 진출에 관심 	7월 중
	<p>▶ Pskistan(파키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79만 6095km² · 인구: 1억 4천만명 · 쌀수출: 세계 5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제도 개선 · 협상준비가 아직 미흡함 · 한국시장 진출에 관심 	7월 중
	<p>▶ India(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316만 6414km² · 인구: 10억 4백만명 · 쌀수출: 세계 4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제도 개선 · 협상준비가 아직 미흡함 · 한국시장 진출에 관심 	7월 중
	<p>▶ Canada(캐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997만 610km² · 인구: 3천 1백만명 · 쌀수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자유화 원칙 강조 · 타 품목 관세율 인하 관심 · 겸역완화에 관심 	7월 중
	<p>▶ Argentina(아르헨티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79만 1810km² · 인구: 3천 6백만명 · 쌀수출: 세계 12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자유화 원칙 강조 · 타 품목 관세율 인하 관심 · 겸역완화에 관심 	7월 중

* 쌀 수출량 순위 자료: USDA, PS&D online service, 2004.3.11

● 시장 개방 협상 대안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관세화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수입량만 수입 (수입량 예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이 수락가능한 수준의 의무 수입량을 매년 증량 · 보이지 않는 관세감축 지속 · 이후 관세화 시 누적감축 효과가 일시에 나타남
관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국의 무리한 의무 수입량 증량 요구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가격, 환율 등에 따라 국내 수입가격이 달라짐 · 따라서 수입량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음 ○ DDA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감축

이는 정부가 아직 ‘관세화 유예’ 와 ‘관세화’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애초의 협상이 시작할 무렵 정부는 ‘관세화 유예’ 원칙을 고수하되 실질적인 이해득실을 따져 ‘관세화’로 갈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위의 표는 정부가 보고 있는 개방 대안별 장단점이다.

결국, ‘관세화 유예’로 가야 되는 원칙은 있으나 상대국의 무리한 시장접근 요구와, 앞에서도 언급한 ‘자동관세화’의 시기적 압박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기도 전에 ‘유예’ 원칙의 의지가 한풀 꺾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실익이란 있는 것인가?

최대한 실익을 따져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 애시당초 쌀협상은 우리가 쌀 수입 개방의 방식과 폭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협상이다. 그렇다면 수입을 하면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아니다’이다. 협상이라

는 것은 협상대상이 서로 이득 볼 것이 있어야 진행이 된다. 물론 이번 쌀협상은 ‘UR협정 부속서 5’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협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이득인가? 이것도 역시 ‘아니다’일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실익을 얻는 차원에서 관세화를 할 것인가 유예를 할 것인가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며 피해를 덜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처사에 지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 모두가 협상결과에 대해 불확실한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까지와 같은 수준에서 유예가 결정된다면 그나마 우리쌀을 지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입개방 압력, 미흡한 농가소득보장대책,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우리 쌀농업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저곡가정책을 강요하며 모두들 경계개발의 일변도로 내달릴 때에도 우리는 묵묵히 논밭을 일구며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온 농민이 아니던가!

련할 여지는 남기게 된다는 데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향후 정부의 협상대응책

이제 당장 6월 WTO 농업위원회 개최시기를 전후해서 있을 2차 협상에서 정부는 어떤 입장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1차 협상에서 주요 대상국들은 ‘관세화유예’로 갈 시에 유예기간, TRQ증량 수준, 용도제한·민간수입 등의 수입관리방식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의 핵심적인 3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쌀 협상을 향후 DDA협상과 연계해 DDA이행기간과 개도국지위부여 여부에 따라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SP(특별품목)·NTC(비교역적관심사항)인정여부에 따른 조건, 개방 대상 품목과 검역완화 등에 따른 범위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협상전술은 발표하지 않

았다. 지난 6월 9일에 개최된 농림부와의 간담회에서 조차도 이보다 더 구체적인 대응책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설사 정부가 대응책이 있다 해도 전술 누출을 우려해 발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협상에서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득해내지 못하더라도 ‘119조원의 농업투용자’와 ‘쌀산업 종합대책’에서 나온 정책들로 국내 농가의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쌀 지키기 이렇게 외친시다!

- 첫 째, 통일대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둘 째, 쌀 관세화 유예 원칙 고수
- 셋 째, 외국산 식용쌀 도입 억제와 국영무역 제도 유지
- 넷 째, 수확기 풍수출하 물량의 효과적인 차단·처리 방안 강구
- 다섯째, 국내 쌀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통주체의 체질 강화
- 여섯째, 적불개의 체계적인 정비와 단가인상을 통한 농가소득 지지정책 확충